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95
----------	-------

발의연월일 : 2026. 9. 16.

발 의 자 : 민병덕 · 정진욱 · 정태호
이강일 · 박민규 · 김 윤
김문수 · 이수진 · 박홍배
송영길 · 김한규 · 이주희
김용만 · 강준현 의원
(14인)

제안이유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은 복수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판매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보험 유통시장에서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에 불과하여, 보험소비자를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사고 접수 대행, 보험금 청구의 지원 및 대행,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 등 보험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동시에 보험상품의 판매, 계약의 유지·관리 및 보험금 지급까지의 과정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책임성

을 확보하도록 하여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보험상품 유통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나.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8조의2 신설).

다.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임원의 자격기준을 보험회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고, 실제 현장 판매 책임자인 그 대표자·상근임원 및 지점의 대표자는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하도록 하며, 그 소속으로 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및 준법감시책임자를 반드시 두도록 함(안 제88조의3 및 제88조의4 신설).

라.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업무를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 보험사고의 접수 대행, 소액 보험금의 지급 대행, 계약조건 및 수수료에 관한 협상 등의 업무로 규정함(안 제88조의5 신설).

마.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취소, 업무정지의 요건 및 그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88조의6 신설).

바.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단체로서 보

험판매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제1항).

사.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이 공동으로 설립한 보험판매전문
협회에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의 등
록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96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
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907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을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판매회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보험판매회사”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제88조의2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8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보험판매회사

제84조제1항·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보험대리점”을 각각
“보험대리점·보험판매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를 “보험대리점·보험판매회사·보험중개사”로 한다.

제87조제2항제2호 중 “보험설계사”를 “보험설계사, 보험판매회사”로 한다.

제88조의2부터 제8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보험판매회사의 등록 등) ① 보험판매회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되지 못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자
2.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자
3. 보험판매전문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보험대리점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고, 보험판매전문회사 중 그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으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의 자는 그 업무 범위 내에서 변경등록 전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판매전문회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요건,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 영업기

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3(보험판매전문회사의 대표자 등) ①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대표자, 상근임원(감사업무 담당자 및 사외이사를 제외한다) 및 지점의 대표자는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보험판매전문회사는 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및 준법감시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판매교육책임자는 본점과 지점에 각각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및 준법감시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88조의4(보험판매전문회사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 되지 못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5(보험판매전문회사의 업무범위 등) ①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의 모집
2. 소속 보험설계사의 교육, 등록업무의 대행, 보험모집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등
3. 보험사고의 접수대행
4.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업무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보험금의 지급대행
6. 보험회사와의 보험모집 위탁계약, 보험모집 수수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의 사업비에 관한 협상
7. 보험금 청구의 지원 및 대행
8.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험상품 및 보험계약정보를 관련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③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소관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제88조의6(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8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제88조의5제4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해당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으로 보험을 모집하는 자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③ 보험판매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89조제2항제2호 중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판매전문회사로”로 한다.

제92조제2항 중 “보험대리점·보험계리사”를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보험계리사”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대리점”을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4조·제87조”를 “제84조·제87조·제88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보험대리점”을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보험대리점”을 “보험대리점, 보험판매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을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판매전문회사”는”으로 한다.

제94조 중 “제84조·제87조”를 “제84조·제87조·제88조의2”로, “보험
대리점”을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로 한다.

제95조제1항제1호 중 “보험대리점”을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
로 한다.

제101조제1항 중 “보험대리점”을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대리점”을 각각 “보험대리점·보험판매
전문회사”로 한다.

제102조의3 중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보험대리점, 보험판매전문
회사, 보험중개사”로 한다.

제132조 전단 중 “보험대리점”을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보험대리점””을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
문회사””로 한다.

제136조제1항 전단 중 “보험대리점”을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
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험대리점””을 ““보험대리점”·“보험
판매전문회사””로 한다.

제178조제1항 중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보험대리점, 보험판매전
문회사, 보험중개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은 공동으로 단체(이하 “보
험판매전문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194조제1항제1호 중 “보험설계사”를 “보험설계사(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보험판매전문협회에 위탁한다.

1. 제84조에 따른 보험대리점 및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소속한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2.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
3.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업무
4. 제88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대리점과 보험판매전문회사간의 변경 등록업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제195조제4항 중 “보험협회는 제87조”를 “보험협회와 보험판매전문협회는 각각 제87조 및 제88조의2”로, “등록된 보험대리점”을 “등록된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으로 한다.

제196조제4항 중 “제88조제2항 또는 제90조제2항”을 “제88조제2항·제88조의6제2항 또는 제90조제2항”으로 하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한다.

제204조제1항제3호 중 “보험대리점”을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으로 한다.

제209조제7항제7호 본문 및 단서 중 “보험대리점”을 각각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907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9. “보험설계사”란 <u>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 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하 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 된 자를 말한다.</u> 10. (생 략) <u><신 설></u> 11. ~ 21. (생 략)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 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 2. (생 략)	법률 제21907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u>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 보험판매전문 회사</u>----- ----- ----- ----- -----. 10. (현행과 같음) 10의2. <u>“보험판매전문회사”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제88조의2에 따라 등 록된 자를 말한다.</u> 11. ~ 21. (현행과 같음)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4. (생 략)

② (생 략)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보
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
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
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
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
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 4. (생 략)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
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
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
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

2의2. 보험판매전문회사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
-----보험대리점·보험판매
전문회사-----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보
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

6. -----
-----보험대리점
·보험판매전문회사-----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u>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u>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 · 과징금 ·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 ----- ----- ----- -----<u>보험대리점 · 보험판매회사 · 보험중개사</u>----- ----- ----- ----- ----- ----- -----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생략)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보험설계사</u>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2. <u>보험설계사, 보험판매회사</u>-----

3. ~ 5. (생략)

③ · ④ (생략)

<신설>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8조의2(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보험판매전문회사

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판매전문회

사가 되지 못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자

2.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자

3. 보험판매전문회사, 보험대리

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로 등록된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

③ 보험대리점은 보험판매전문

<신 설>

회사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고, 보험판매회사 중 그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으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의 자는 그 업무 범위 내에서 변경등록 전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판매회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보험판매회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판매회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보험판매회사의 등록요건,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3(보험판매회사의 대표자 등) ① 보험판매회

<신 설>

사의 대표자, 상근임원(감사업무 담당자 및 사외이사를 제외한다) 및 지점의 대표자는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보험판매전문회사는 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및 준법감시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판매교육책임자는 본점과 지점에 각각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및 준법감시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88조의4(보험판매전문회사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 되지 못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

<신 설>

까지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5(보험판매전문회사의 업무범위 등) ①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의 모집

2. 소속 보험설계사의 교육, 등록업무의 대행, 보험모집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등

3. 보험사고의 접수대행

4.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업

무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보험금의 지급대행

6. 보험회사와의 보험모집 위탁 계약, 보험모집 수수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의 사업비에 관한 협상

7. 보험금 청구의 지원 및 대행

8.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험상품 및 보험계약정보를 관련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③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소관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제88조의6(보험판매전문회사의

<신 설>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8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제88조의5제4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

	<u>2조의2를 위반한 경우</u>
	<u>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u>
	<u>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u>
	<u>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u>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u>7. 해당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으로 보험을 모집하는 자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u>
	<u>③ 보험판매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u>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① (생략)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u> <u>으로</u> 등록된 자 3. ~ 5. (생략) ③ · ④ (생략) 제92조(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① (생략) ②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 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 회사 · 보험설계사 · <u>보험대리점</u> · <u>보험계리사</u>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제93조(신고사항) ① 보험설계사 · <u>보험대리점</u> 또는 보험중개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1. <u>제84조 · 제87조</u>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 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 된 경우 2. ~ 6. (생략) 7. <u>보험대리점</u> 또는 보험중개사	2. <u>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u> <u>는 보험판매회사</u>로----- -----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2조(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보험대리점 ·</u> <u>보험판매회사 · 보험계리사</u> ----- -----. 제93조(신고사항) ① ----- <u>보험대리점 · 보험판매회사</u> ----- ----- ----- -----. 1. <u>제84조 · 제87조 · 제88조의2</u>- ----- ----- ----- 2. ~ 6. (현행과 같음) 7. <u>보험대리점 · 보험판매회</u>
---	--

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
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
우

8. (생략)

② (생략)

③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
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 또는 보
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로
본다.

제94조(등록수수료) 제84조·제87
조 및 제89조에 따라 보험설계
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
사가 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사-----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

④ 보험대리점, 보험판매전문회
사-----
-----“보
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
험판매전문회사”는-----
-----.

제94조(등록수수료) 제84조·제87
조·제88조의2-----

-----보험대리점·보
험판매전문회사-----

제95조(보험안내자료)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1.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2.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累計額)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

제95조(보험안내자료) ① -----

-----.

1. -----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①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

-----.

②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

-----보험대리점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2조(준용)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국내사

· 보험판매전문회사-----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

---.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

-----보험대리점, 보험판매전문회사, 보험중개사-----

---.

제132조(준용)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

-----.

무소”·“보험대리점” 또는 “보
험중개사”로 본다.

제136조(준용) ①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② · ③ (생략)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이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고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후단 신설>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
회사”-----

제136조(준용) ① -----보
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

-----“보험대리점”.

“보험판매전문회사”-----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① -----보험대리점, 보
험판매전문회사, 보험중개사----

-----, 이 경
우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
리점은 공동으로 단체(이하
“보험판매전문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94조(업무의 위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한다. 1. 제84조에 따른 <u>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u> 2. 제87조에 따른 <u>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u> <u><신설></u> ② ~ ④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4조(업무의 위탁) ① ----- ----- -----. 1. -----<u>보험설계사</u> (<u>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보험</u> <u>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u> <u>는 제외한다</u>)----- <u><삭제></u>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보험 판매전문협회에 위탁한다. 1. 제84조에 따른 <u>보험대리점</u> <u>및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소속</u> <u>한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u> 2. 제87조에 따른 <u>보험대리점의</u> <u>등록업무</u> 3.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u>보험</u> <u>판매전문회사의 등록업무</u> 4. 제88조의2제3항에 따른 <u>보험</u> <u>대리점과 보험판매전문회사간</u> <u>의 변경등록업무</u> 5. 그 밖에 <u>금융위원회가 정하</u> <u>는 업무</u>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	--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① ~ ③ (생략)

④ 보험협회는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대리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6조(과징금) ① ~ 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제88조제2항 또는 제90조제2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같음하여 업무정지 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생략)

제20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험협회와 보험판매전문협회는 각각 제87조 및 제88조의 2-----등록된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

-----.

제196조(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88조제2항·제88조의6제2항 또는 제90조제2항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보험중개사-----

-----.

⑤ (현행과 같음)

제204조(벌칙) ①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자

3의2. ~ 9. (생략)

② (생략)

제209조(과태료)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7.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3.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

3의2.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9조(과태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6. (현행과 같음)

7.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

-----.
-----보험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

7의2. ~ 21. (생 략) ⑧ · ⑨ (생 략)	---. 7의2. ~ 21. (현행과 같음) ⑧ · ⑨ (현행과 같음)
--	--